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293호(號) 1931(昭和 6)년 5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66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1(昭和 6)년 5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- 1 품 명(品 名) 쌀[米]
- 2 발 역(發 驛) 진주(晉州), 남문산(南文山), 함안(咸安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화물운송장기재(貨物運送狀記載) 하수인(荷受人) 하수(荷受)의 것 1인(人)에 대하여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역착(驛著) 통계(通計) 2천톤(噸)에 달(達)한 경우 보통임률(普通賃率)의 2할(割)5푼(分) 감(減)
화물운송장기재(貨物運送狀記載) 하수인(荷受人) 하수(荷受)의 것 1인(人)에 대하여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역착(驛著) 통계(通計) 3천톤(噸)에 달(達)한 경우 보통임률(普通賃率)의 3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1(昭和 6)년 5월1일부터
1932(昭和 7)년 3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본(本) 화물(貨物)은 소정임률(所定賃率)에 의(依)하여 취급(取扱)하고, 전기(前記) 수량(數量)에 달(達)한 것에 대하여 기수(既收)운임(運賃)과 본(本) 임률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하는 것으로 함.
나 본(本) 할인(割引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것은 미리 조선총독부 철도국장(朝鮮總督府 鐵道局長) 앞[宛]으로 그 신청(申請)을 하고, 또 매월(每月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조서(調書)를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: 착역경유[著驛經由])에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진주(晉州)·남문산(南文山)·함안(咸安) 발(發) 부산(釜山)·초량(草梁) 착(著) 쌀[米] 운임(運賃)조서(調書)

(월분[月分])

하수인(荷手人)

화물운송통지서(貨物運送通知書)	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톤수(噸數)	소정임률(所定賃率)	할인운임(割引運賃)	환급액(還給額)
일 부(日付)	번 호(番號)						
계(計)							